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7일,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성원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채용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군무원인사법」의 경력경쟁채용 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률은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특별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시행과 관련하여 기 진행 중인 시험과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칙에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개정안 시행과 관련하여 기 진행 중인 시험과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칙에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현행법의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

- [붙임]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부칙 본문을 제1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시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함(안 부칙).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본문을 제1조(시행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신 설></u>	<u>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u> <u>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본문 중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할”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특별채용되기”를 “경력경쟁채용되기”로, “특별채용시험을”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된”으로, “특별채용되는”을 “경력경쟁채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된”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의”를 “경력경쟁채용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과 「군무원인사법」”을 「군무원인사법」으로, “특별채용은”을 “경력경쟁채용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및 제3

항,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 ⑤ (생략) ⑥ 군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경력 <u>경쟁채용할</u> -----. ----- ----- ----- ----- -----.
제20조(인사교류) ① (생략)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특별채용시험을	제20조(인사교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경력경 <u>쟁채용되기</u> ----- ----- -----경력경쟁채용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
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
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
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
거나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되거나 특별채용된 후 승진 임
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
단만 적용한다.

④ (생 략)

제24조(특별채용의 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과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
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
의 특별채용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

시험을-----.

③ -----

-----경력경쟁
채용된-----

-----경력경쟁채용되는-----

-----경력경쟁채용된-----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경력경쟁채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군무원인사법」-----

--경력경쟁채용은-----